
 <b>국토교통부</b>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<b>보도참고자료</b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7. 24(금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• 과장 김홍목, 사무관 윤성업, 주무관 송혜주 • ☎ (044)201-3338, 3347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, 국회 통과

### - 유한책임대출 연내 도입 추진 -

-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- 유한책임대출(비소구대출)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,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.

#### 【 무한책임(소구)대출 vs 유한책임(비소구)대출 】

무한책임(소구)대출	유한책임(비소구)대출
▶ 담보주택 + 채무자에게 상환청구	▶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

-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은행이 경락대금을 통한 원금을 회수하고,
  - 이때,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.
- 하지만, 유한책임 대출제도 하에서는,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.

□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이 대출기관과 대출자가 집값 변동의 위험을 일부 공유함으로써, 주택경기 변동을 고려한 책임있는 대출, 심사체계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,

※ 위기시 가계대응력 제고방안으로서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  
(가계부채 종합대책 7.22)

○ 특히, 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, 주택도시기금에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대출심사체계, 대출요건,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,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.

\* 개정 기금법 시행일 : 공포 후 4개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☎ 044-201-33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